

<p>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 第2條第1項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. 5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 ②(適用時限)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①(施行日) 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 ②(經過措置) 從前에 박물관법의 適用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規定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施設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檢認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 ②(適用時限)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.</p>	<p>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 위한 市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새마을事業支援을 위한 市稅課稅免除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 ②(適用時限)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 대한 自動車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障人用乘用自動車에 대한 自動車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 ②(適用時限)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 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國家有功者및 그遺族의住宅取得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한다. ②(適用時限)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 및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中古自動車賣買業者의 賣買用中古自動車에 대한 市稅課稅免除 및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</p>